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590
----------	-----

2024. 6. 24.(월)
산 업 경 제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김국기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24년 5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4년 6월 3일

라. 상정일자 : 제417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4년 6월 13일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김국기 의원)

가. 제안이유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선진 양육문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질평가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
- 위원의 임기 (안 제5조)
- 기질평가위원회의 소집 (안 제6조)
- 회의록 작성 (안 제7조)
- 기질평가비용 등 (안 제8조)
- 사무의 위탁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종섭)

- (필요성)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위임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짐
- (타당성) 본 조례에서는 기질평가위원회의 기능·구성·소집 및 기질평가비용 등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중복의 여건에 맞게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적합성) 관련 법령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와 구성 등 법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종합의견)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맹견 및 공격성이 높은 반려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 개물림 사고 등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조례의 제정은 적절하다 보여짐
향후 관계부서에서는 본 조례를 바탕으로 기질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며, 세부적 기질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이나 내부규정으로 마련하여 기질평가위원회 및 기질평가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선진 양육문화 및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 및 심의 조정한다.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를 위한 심의
5.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6.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소집 등) ① 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 위원회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② 위원회 소집은 도지사의 요청으로 소집하며, 소집일시, 장소, 안건 등을 소집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질평가가 없는 경우 도지사의 요청으로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 타 지역의 평가 사례 등을 논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충청북도 관계공무원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기질평가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서명 또는 날인하여 회의록을 5년간 보관한다.

제8조(기질평가비용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개의 소유자 부담으로 하며,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의 세부 기준 및 지급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를 따른다.

② 기질평가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기질평가비용은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당일 납부하며,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안전조치 등) 위원회는 기질평가 수행 시 평가위원과 평가진행요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위한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보조견 등 해당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5. “맹견”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를 말한다.

- 가.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
- 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어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한 개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제15조에 따른 등록을 할 것

2. 제23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할 것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맹견의 인도적인 처리는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⑥ 시·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맹견사육허가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비용의 기준, 지급 범위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기질평가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둔다.

1.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 종(種)의 판정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맹견의 기질평가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인도적인 처리에 대한 심의
4. 제24조제3항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에 대한 기질평가
5. 그 밖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행동과 발달 과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
3. 동물복지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기질평가위원회의 권한 등) ①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의견서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기질평가위원회는 평가에 필요한 경우 소유자의 거주지,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서 기질평가와 관련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소유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평가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석, 자료제출 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기질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 등) ① 시·도지사 또는 기질평가위원회는 기질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물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피해를 가한 사건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 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제29조(비밀엄수의 의무 등) ①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본다.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3(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기질평가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 기질평가위원회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등에게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질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충청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반려견 증가에 따라 개로 인한 사망·상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맹견에 대한 사육허가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함

2. 비용 발생 요인

- 맹견 소유자가 맹견사육허가를 받기 위해 기질평가에 지출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비용
- 도에서 동물보호법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매년 평가장 운영 및 평가인력 수당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발생

3. 관련조문

제9조(기질평가비용 등) ① 생략

②기질평가비용은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지사는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기질평가비용은 기질평가를 실시하는 당일 납부하며, 납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질평가를 위한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평가시설, 평가보조인력, 보조견 등 해당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질평가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질평가위원회의 수당 및 매년 평가시설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 소요비용 (1차년도) 64,400,000원

(2차년도 이후) 39,500,000원

* 산출기준 : 연 10회 운영, 1회 10두 평가(1차년도 고정비용 포함)

구분	내용	단가	인원	비용(원)	비고
(총계) 1년 기준				64,400,000	
인 건 비	평가위원 수당	300,000	3	900,000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규정 준용
	(소계) 1회당 기준			900,000	
변 동 비 용	평가진행자	800,000	1	800,000	
	평가보조인력	250,000	5	1,250,000	
	평가보조견	250,000	4	1,000,000	대형견2, 소형견2
	(소계) 1회당 기준			3,050,000	10두 기준
고 정 비 용	안전장비 구입비	1,500,000	1	1,500,000	보호복, 안전장비 등
	평가장비 구입비	1,200,000	1	1,200,000	유모차, 모형더미 등
	촬영장비 구입비	2,200,000	1	2,200,000	카메라 1대 등
	안전시설 설치비	20,000,000	1	20,000,000	안전 펜스 등
	(소계) 1년 기준			24,900,000	

- 세외수입 : 25,000,000원/년 (소유자 부담액)

* 산출기준 : 250,000원 × 100마리

250,000원(마리당 소유자 부담액, 농식품부 고시 제정안)

100마리(도내 연평균 개물림사고 마리수)

나. 추계 결과

- 사업기간 : 2025년 ~ 2029년 (5년)
- 세출내역 : 2.2억원 (도비 100%)
- 세외수입 : 1.2억원 (소유자 부담비용)

다. 재원조달방안

- 일반회계에 편성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5년)	2차년도 (2026년)	3차년도 (2027년)	4차년도 (2028년)	5차년도 (2029년)	계
세 입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그 외 수입 (기질평가 비용 중 소유자 부담액)	25,000	25,000	25,000	25,000	25,000	125,000
세 출	64,400	39,500	39,500	39,500	39,500	222,400
기질평가 위원수당 및 용역비용	64,400	39,500	39,500	39,500	39,500	222,400

6. 작성자 : 농정국 축수산과장 최동수